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0 선고 2020가단3599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1. 1. 2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0.10. 30.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송인우

별지